



9.7급 / 국회 / 경찰 / 공사·공단 / 군무원 / 특채 / 승진

2023 김종규 최빈출 500 선행정학

기다나

김종규

최근 10년간 최소 3회 이상 빈출된
500문제를 정제하여 단원별로 정리

2023 시험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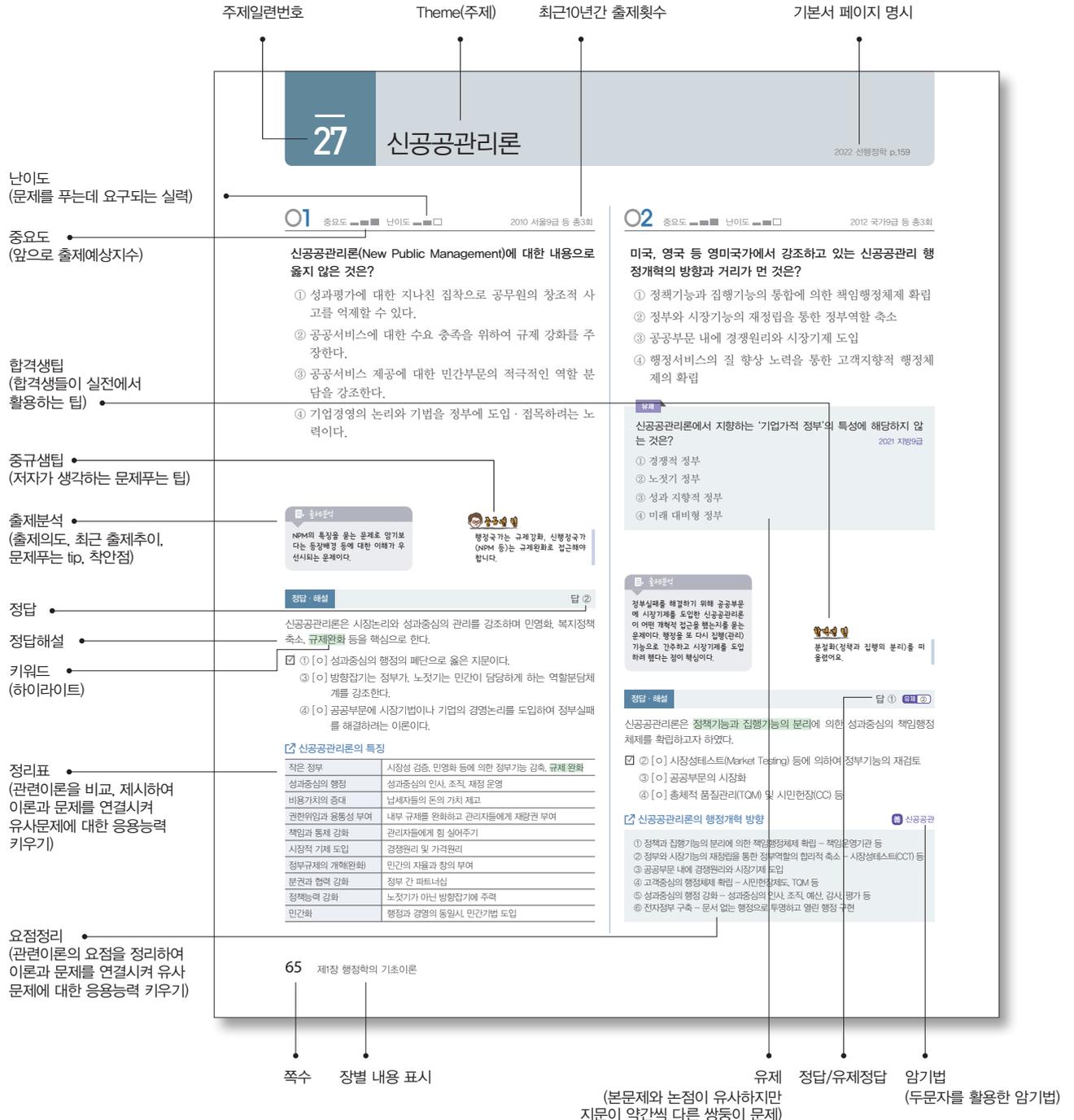
커넥츠 공단기
gong.conects.com

행정학도
기출에서 나온다

믿고 따르는 선행정학 입체 커리큘럼



STEP 1 행정학, 즐거운 시작	이론입문 행정학, 큰 숲 그리기	기출입문 대표기출(최빈출) 확인하기
STEP 2 이론 완성하기	이론심화 결가지 붙이기, 이론완성	기출심화 고난도, 신경향 문제까지 완전 분석
STEP 3 기출문제 정복	기출분석 최근 10개년 기출 완벽 분석, 기출패턴, 함정, 출제 포인트 등 분석	추가 Tip 응용문제, 신경향 출제 예상문제 분석
STEP 4 압축하기	핵심요약 여기서 다 나온다, 숲과 가지의 연결	OX 파이널 OX-지문으로 문제 해부, 이론과 문제의 연결
STEP 5 실전감각 익히기	동형모고 시험에서 보게 될 문제를 미리 본다. 실전감각 익히기	햇총 햇갈리는 부분 완벽 정리, 30점 UP 시킬 수 있는 기회의 커리



이 책의 내용과 순서

C O N T E N T S

제1장 행정학의 기초이론

01	공공재로서의 행정	11
02	행정기능	14
03	행정과 정치	15
04	행정과 경영	18
05	행정과 사회 - NGO	20
06	사회적 자본	21
07	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특징	23
08	신행정국가의 특징과 정부관	24
09	후기산업사회(포스트모더니티)의 행정	27
10	시장실패	29
11	정부규제	31
12	정부실패	33
13	공공부문의 민간화	36
14	행정이념의 변천과 관계	40
15	행정의 본질적 가치	41
16	행정의 수단적 가치	44
17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48
18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49
19	과학적 관리론	51
20	인간관계론	52
21	행태론	53
22	체제론	54
23	신행정론	55
24	현상학	57
25	공공선택이론	58
26	신제도론	62
27	신공공관리론	65
28	거버넌스론	67
29	신공공서비스론	69
30	탈신공공관리론	71
31	행정이론 종합	72

제2장 정책론

01	정책과학의 특성과 본질	77
----	--------------	----

02	정책의 본질과 유형	78
03	정책의제의 설정	82
04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모형	86
05	정책네트워크(정책망) 모형	89
06	정책목표	91
07	정책분석의 유형	92
08	체제분석	93
09	관리과학	96
10	직관적(판단적) 예측	97
11	불확실성과 미래예측	99
12	정책결정의 본질	99
13	정책결정 이론모형(Ⅰ) : 개인차원의 의사결정모형	100
14	정책결정 이론모형(Ⅱ) : 집단차원의 의사결정모형	103
15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107
16	정책집행이론	109
17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114
18	기획의 발달과 유형	115
19	정책평가의 유형과 방법	116
20	정부업무평가	118
21	정책평가의 요소 : 인과관계 · 변수 및 타당성	120
22	정책평가의 방법 : 실험	126
23	정책변동과 환류	129

제3장 조직론

01	조직의 유형	133
02	조직이론의 변천과 유형	138
03	인간관과 동기이론	140
04	조직문화	145
05	의사전달	145
06	갈등	146
07	권력	149
08	리더십	150
09	조직의 구조변수	154
10	조직의 원리	158
11	관료제	159
12	후기관료제(탈관료제) - 애드호크라시(adhocracy)	162

01 중요도 난이도

2018 서울7급 등 총8회

신성과주의 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 ②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 ③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를 예산과 연계시킨 제도이다.
- ④ 예산집행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출제분석

신성과주의예산의 개념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최근 빈출되고 있다. 중래 성과주의와의 차이에 유의하자.



신성과주의는 예산의 형식이나 회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지는 않습니다.

정답·해설

답 ②

신성과주의는 1990년대 결과기준 예산제도로 투입보다는 산출이나 성과를 중시하며 이를 책임성과 연관시키는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1950년대 과거의 성과주의와 구분된다. 과거의 성과주의는 예산의 형식 및 회계제도의 변경 등 개혁의 범위가 광범위한데 비해 신성과주의는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 개편 등 큰 틀의 제도개혁보다는 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의 활용을 개혁의 목표로 삼는다. 개혁의 범위가 오히려 좁고 단순하였다. 이미 회계제도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예산형식은 프로그램예산제도가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고전적 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의 차이

	1950년대 성과주의	1990년대 성과주의
성과정보	투입과 산출(능률성)	산출과 결과(효과성)
성과책임	정치적·도덕적	구체적·보상적
경로	단선적 가정	복선적 가정
성과관점	정부(공무원) 관점	고객(만족감) 관점
회계방식	불완전한 발생주의	완전한 발생주의
연계범위	예산제도에 국한	국정 전반에 연계
시대	행정국가	탈행정국가
예산개혁초점	예산의 형식·제도(광범위)	예산에 담겨질 성과정보(좁고, 단순)
원기중심	단위사업	프로그램(정책사업)

02 중요도 난이도

2012 전환특채 등 총7회

오늘날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 ② 거시적·하향적 예산(top-down)을 도입한다.
- ③ 중앙예산기관에서 엄격히 예산을 통제한다.
- ④ 미래가 예측가능한 발생주의(복식부기)예산을 도입한다.



통제가 상실된 것도 아니지만 엄격한 통제도 아닙니다.

정답·해설

답 ③

부처별 예산의 총괄배정과 각 부처장관의 재량권이 증대되는 것이 오늘날 예산의 주요 특징이다. 사전통제가 어느정도 강화되긴 하였지만 ③은 전통적인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의 특징**이다.

- ☑ ① [○] 신성과주의예산은 D-Brain(예산회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 ② [○] 지출한도나 전략적 배분 등 거시적인 요소는 중앙의 재정당국에서 하달된다.
- ④ [○] 미래지향적인 성과중심의 회계방식(발생주의·복식부기)을 기반으로 한다.

신성과주의예산의 특징

- ① 자율과 책임(통제, 접근과 분권이 조화된 예산)
- ② 거시적·하향적 예산
- ③ 거시적인 요소(중장기전략계획, 지출한도, 전략배분 등)는 중앙에서 통제하고, 미시적인 요소(한도 내에서 예산 편성 및 운용, 자금관리)는 부처 자율
- ④ 국가재원의 전략적(하향적) 배분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중앙통제를 인정
- ⑤ 자금관리(재정운용)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예산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
- ⑥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 적용

01 중요도 ■■■ 난이도 ■■■□

2012 서울9급 등 총8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
-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이 인정된다.
- ③ 지방세는 조례로 부과하지 못한다.
- ④ 집행기관이 우위를 점한다.

출제분석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을 묻는 문제로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대립형이라는 점을 착안하면 된다.



의회의장은 불신임 가능하지만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정답 · 해설

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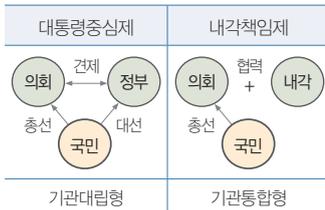
→ but 자치단체마다 달리 정할 수 있음(2022.113 시행)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대립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집행기관이 우위를 점하는 기관대립형 구조이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기관구성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 ☑ ①④ [○] 집행기관 우위 또는 집행기관 직선의 기관대립형
- ③ [○] 조세법정주의

지방정부형태

(1) 중앙의 대통령중심제/내각책임제와의 관계



(2)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

- ① 기관대립형 : 의결과 집행기관이 따로 선출 · 구성되어 분리된 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집행기관 중심의 형태 ⇒ 중앙의 대통령중심제와 같은 형태로 독일 · 일본 · 우리나라 등 주로 대륙계 국가에서 채택
- ② 기관통합형 : 의결과 집행기관이 구분되지 않거나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는 의결기관 중심의 정부형태 ⇒ 중앙의 내각책임제와 같은 형태로서 주로 영미계 국가와 프랑스 등에서 채택

02 중요도 ■■■ 난이도 ■■■□

2016 지방9급 등 총6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 ②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제분석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의 장단점을 묻는 문제로 수차례 출제되었다. 기관대립형은 중앙의 대통령중심제, 기관통합형은 내각책임제와 같은 방식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쉽다.

정답 · 해설

답 ③

기관대립형은 집행부인 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의회가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갈등과 대립으로 지방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장점	단점
①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 정치와 책임행정 구현 용이 ¹⁾	① 견제와 균형을 상실로 의회의 권력남용 우려 ⇒ 민주성 저해
② 의회중심의 운영으로 갈등과 대립의 소지가 없어 지방행정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²⁾	②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기구 없어 행정의 전문화 저해
③ 신속하고 공정한 자치행정 가능	③ 의원간 업무분담으로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 저해
④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 적합	④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 개입 우려
⑤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행정집행 가능	⑤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의 이익대표에 부적합
⑥ 집행기구 구성에까지 주민대표성 확보	

- 1)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도 가능하지만 의원들 간 책임분산으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는 못하다.
- 2) 기관대립형은 기관통합형의 장단점과 반대이다. 기관대립형은 의회와 단체장간 견제와 균형으로 지방행정의 민주화에는 기여하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마찰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비교정리

[2022.1.13. 시행]

내용	종전	개정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도록 함	① 지방자치법 :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군과 자치구)를 둘 ② 세종시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에 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음	① 지방자치법 :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함 ② 세종시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에 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음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자율화	일률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두도록 함 (기관대립형)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단체장 선임방법 등 포함)을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신설	사무처리의 기본원칙만 규정되어있을 뿐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은 규정이 없었음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규정 ① 중복배분 금지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 기초단체 우선 ③ 포괄적 배분의 원칙 ; 자기 책임하에 종합처리																		
자치단체의 사무 예시규정 개정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삭제됨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법적 근거만 남기고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주민조례발안법(2022.1.13. 시행)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현행</th> <th>개편</th> </tr> </thead> <tbody> <tr> <td>근거법률</td> <td>지방자치법</td> <td>주민조례발안법</td> </tr> <tr> <td>청구연령</td> <td>19세 이상</td> <td>18세 이상</td> </tr> <tr> <td>청구대상</td> <td>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td> <td>지방의회에 직접 청구</td> </tr> <tr> <td>청구요건</td> <td>① 광역단체 및 50만 이상 대도시 : 1/100~1/70 ② 기타 시·군 및 자치구 : 1/50 이상 1/20 이하</td> <td>①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단체 : 1/200 ② 100만~800만 광역단체 : 1/150 ③ 50만~100만 기초단체 : 1/100 ④ 10만~50만 기초단체 : 1/70 ⑤ 5만~10만 기초단체 : 1/50 ⑥ 5만미만 기초단체 : 1/20</td> </tr> <tr> <td>처리시한</td> <td>단체장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td> <td>지방의회는 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td> </tr> </tbody> </table>		현행	개편	근거법률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법	청구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청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청구요건	① 광역단체 및 50만 이상 대도시 : 1/100~1/70 ② 기타 시·군 및 자치구 : 1/50 이상 1/20 이하	①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단체 : 1/200 ② 100만~800만 광역단체 : 1/150 ③ 50만~100만 기초단체 : 1/100 ④ 10만~50만 기초단체 : 1/70 ⑤ 5만~10만 기초단체 : 1/50 ⑥ 5만미만 기초단체 : 1/20	처리시한	단체장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	지방의회는 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
		현행	개편																	
	근거법률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법																	
청구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청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청구요건	① 광역단체 및 50만 이상 대도시 : 1/100~1/70 ② 기타 시·군 및 자치구 : 1/50 이상 1/20 이하	①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단체 : 1/200 ② 100만~800만 광역단체 : 1/150 ③ 50만~100만 기초단체 : 1/100 ④ 10만~50만 기초단체 : 1/70 ⑤ 5만~10만 기초단체 : 1/50 ⑥ 5만미만 기초단체 : 1/20																		
처리시한	단체장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	지방의회는 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																		
주민규칙개폐의견제출제도 도입	규칙 제·개정에 대한 주민의견제출제도 없었음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단체장에게 제출 가능,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감사청구연령	19세 이상 주민	18세 이상 주민(외국인 포함)																	
	연대서명인원 축소	다음 인원이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 ① 시·도 : 5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 300명 ③ 그 밖의 시·군·자치구 : 200명	다음 인원이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 ① 시·도 : 3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 200명 ③ 그 밖의 시·군·자치구 : 150명																	
	감사청구시효 연장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3년																	
	공표와 열람	규정 없었음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내용을 청구받은 받은날부터 5일 이내 공표하고 공표일부터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함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규정 없었음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지방의원의 정책지원전문인력 신설	규정 없었음	지방의원 정수의 1/2범위에서 조례로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 명확화	규정 없었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사무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등으로 겸직금지 대상기관 명확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단체장이 사무직원 인사권 등 행사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폐지분합시 최초 임시회의 소집권자 규정	규정 없었음	자치단체 폐지분합시 최초임시회의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																		
중앙과 지방 협력 강화	규정 없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둬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gong.conects.com
 www.kaspa.co.kr
 TEL. 02-532-5280~1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2년 4월 29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A동 103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FAX. 02-532-5315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파본은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입처에서 교환해드립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 일러스트를 포함한 디자인 및 편집
형태, 배포에 대한 권리는 (주)카스파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 배포, 전송할수 없습니다.

ISBN 979-11-92405-02-5

값 22,000원

